

대구지방법원 2020. 10. 7 선고 2020가단116675 판결 [계약금반환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

담당변호사 김병진, 우혜정

피고B

변론 종결 2020. 9. 11.

판결 선고 2020. 10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7,291,803원 및 그 중 30,000,000원에 대하여 2020. 4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허용구

별지